
재결신청 주체 관련 질의

1 질의

「하천법」 제27조에 따른 지방하천 (수입천) 의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하천관리청 (강원도지사) 과 사업시행자 (양구군수) 중 어느 기관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?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토지보상법” 이라 함) 」 제28조제1항은 “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(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)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” 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“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사업시행자 (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) 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, 하천공사 시행 시 양구군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하천관리과-1056호 (2015. 6.11.)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2015.6.18. 토지정책과-4366】